

의안번호	제669호
의결 연월일	2014년 월 일 (제330회)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자	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9
----------	-----

발의연월일 : 2014년 6월 2일

발 의 자 : 최미애, 장선배, 노광기,
김양희, 박종성, 손문규,
최병윤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권고(2012. 4. 2)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 도 가족 범위에 포함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 포함 내용 : 지원 목표·비전, 시책, 재원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안 제8조부터 제14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당연직, 위촉직), 위원장(행정부지사)

- 기능 : 지원계획 심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등

마.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 협의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7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유관기관 실무부서장 또는 업무담당자),

위원장(여성정책관)

- 기능 : 지원사업 등에 대한 업무 공유 및 협의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계획 및 추진(안 제18조)

사. 외국인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안 제19, 20조)

아. 세계인의 날(5.20), 세계인 주간(1주) 설정 및 행사실시(안 제22조)

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안 제24조)

차. 종전의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10호
- 비용추계서 : 별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시·군별 현황(2013.1.1. 기준)

(단위: 명)

구분 \ 구군	합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외국인주민	39,177	9,683	4,642	2,404	4,668	905	1,414	1,002	811	4,501	1,043	7,547	557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7,259	1,979	935	615	788	275	400	306	227	540	232	781	18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3. 외국인주민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
8.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9. 의료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관 또는 실·국장
나.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1명

다.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청주고용센터·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업무 관계기관
의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민간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학계 및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제15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

성정책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유관기관 · 단체의 실무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사업 추진 등

제18조(시책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 · 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충청북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포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4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2.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원되는 운영 관련 사업비

2. 비용 발생 요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경비
- 이주여성 쉼터 운영

3. 관계법령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 지원법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4년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비 : 연 3,334,360천원
-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 : 연 59,400천원
- 이주여성 쉼터 운영 : 연 141,415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비 :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9%, 시군비 21%)
- 다문화가족 행사지원 : 도비 50%, 시군비 50%
- 이주여성 쉼터 운영 :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15%, 시군비 15%)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변 혜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3,535,175	3,535,175	3,535,175	3,535,175	3,535,175	17,675,875
다문화가족센터운영		3,334,360	3,334,360	3,334,360	3,334,360	3,334,360	16,671,800
이주여성쉼터 운영		141,415	141,415	141,415	141,415	141,415	707,075
다문화가족행사지원		59,400	59,400	59,400	59,400	59,400	297,000
재원 조달		3,535,175	3,535,175	3,535,175	3,535,175	3,535,175	17,675,87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77,968	377,968	377,968	377,968	377,968	1,889,840
	지방세	377,968	377,968	377,968	377,968	377,968	1,889,840
	세외수입						
지방채							
여성발전기금		2,433,041	2,433,041	2,433,041	2,433,041	2,433,041	12,165,205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708,966	708,966	708,966	708,966	708,966	3,544,83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15,200	15,200	15,200	15,200	15,200	76,000